

의안번호	2219358
의 퇴 인	정진욱 의원
회 답 일	2026. 6. 30.
추계번호	26F294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원유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- 원유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- 공제율: (중소) 25%, (중소졸업) 20%, (일반) 15%, *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개 과세연도 동안 20% 공제율 적용 - 적용기한: 2030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함에 따라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기업규모에 따라 15~25%로 차등화된 공제율을 적용
 - 공제율(%): (중소기업) 25, (중소졸업기업*) 20, (일반기업) 15
 - *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개 과세연도 동안 20% 공제율 적용
 - 해당 사업화 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동법 시행령 규정 사항
 - 적용기한: 2030.12.31.
- 최근 국내 정유업계의 시설투자(CAPEX)는 일부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전반적으로는 정제능력 확대보다는 설비 효율화·고도화, 친환경 설비 및 석유화학 등 사업다각화를 위한 투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¹⁾

- 4대 정유기업 중 사업부문을 정유로 구분하여 시설투자액(CAPEX)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²⁾의 투자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임
 - GS칼텍스 시설투자액(CAPEX, 억원): ('23) 5,340 → ('24) 5,850 → ('25) 6,458
 - S-OIL 시설투자액(CAPEX, 억원): ('23) 21,856 → ('24) 30,419 → ('25) 39,060
- ※ S-OIL의 시설투자액은 2023년 착수한 초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인 '샤heen(Shaheen) 프로젝트'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, 동 투자액에는 석유화학 설비 투자도 포함되어 있음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원유 공급망 관련 기업의 과세 정보와 시설투자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으나, 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

1) 한국신용평가(KIS), 「S-OIL(주) Credit Opinion」 (2024.6.);
한국신용평가(KIS), 「2025 KIS Credit Outlook - 석유화학산업」

2) 4대 정유기업(SK이노베이션, GS칼텍스, S-OIL, HD현대오일뱅크) 중 SK이노베이션은 이차전지 등 비정유 사업의 비중이 커 정유부문의 시설투자 규모를 식별하기 어렵고, HD현대오일뱅크는 비상장회사로서 사업부문별 공시자료가 제한적임